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1.

발 의 자 : 서미화 · 허성무 · 박지원  
서영석 · 김한규 · 이연희  
이수진 · 이정문 · 박정현  
김원이 · 김준혁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「장애인복지법」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신고 방해·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.

이에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·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6제4항·제5항, 제57조제4호의2·제4호의3 신설 등).



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6제3항 중 “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”를 “신고인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4항 및 제5항”을 “제6항 및 제7항”으로 한다.

④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인에게 노인학대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
2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
3.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
4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,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
5. 교육·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·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

6.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·공개, 집단 따돌림 및 폭행·폭언,  
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·신체적 위해 행위

7.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,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

⑤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7조제4호 중 “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”를 “신분 노출 금지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39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 
한 자

4의3. 제39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 
방해하거나 노인학대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) ①·② (생략)  <u>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</u>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<u>③신고인은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<u>④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인에게 노인학대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</u></li> <li><u>2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</u></li> <li><u>3.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</u></li> <li><u>4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,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</u></li> <li><u>5. 교육·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·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, 그 밖</u></li> </ol>

<신 설>

④ · ⑤ (생 략)

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 ·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5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3. (생 략)
4.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

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

6.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
  - 공개, 집단 따돌림 및 폭행
  - 폭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 · 신체적 위해 행위

7.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,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

⑤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· ⑦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
⑧ 제6항 및 제7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57조(벌칙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  
-----신분 노출 금지-----

<p><u>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5.·6. (생 략)</p>	<p>-----</p> <p><u>4의2. 제39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</u></p> <p><u>4의3. 제39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노인학대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</u>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